



제439회 국회 (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신상정보공개 특정중대범죄에 산업기술 등 유출범 추가〉  
■ 송언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755호)

2026.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심 정 희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1.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              | 2  |
|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                | 4  |
| 가. 중대범죄 신상 공개 제도 입법경과 및 논의사항 ..... | 4  |
| 나. 산업기술 등 유출범죄 처벌 개관 .....         | 5  |
| 다. 검토의견 .....                      | 6  |
| 라. 관계기관 의견 .....                   | 14 |



##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송언석의원 등 12인
2. 발 의 일: 2025. 9. 5.
3. 회 부 일: 2025. 9. 8.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사회, 개인에게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특정중대범죄 사건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요건, 절차 및 공개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음.

신상정보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범죄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과 피의자 등의 기본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나, 최근 산업기술 유출범죄의 규모와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국가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의 유출은 국가 경쟁력과 안보를 저해하여 그 피해는 일반 국민에게 돌아가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해당 범죄의 피의자 등의 신상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목적으로 산업기술, 국가핵심기술, 방위산업기술을 유출·침해한 죄를 특정중대범죄에 포함하고 해당 범죄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산업기술 유출범죄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2조).

### Ⅲ. 검토의견

#### 1.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개정안은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라 함)에 따라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의 대상이 되는 특정중대범죄(제2조)<sup>1)</sup>에 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2항<sup>2)</sup>의 산업기

##### 1)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특정중대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같은 편 제2장 외환의 죄
2.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의 죄
3. 「형법」 제119조(폭발물 사용)의 죄
4.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제2항의 죄
5.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59조(상해치사)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 다만,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의 경우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에 한정한다.
6.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제3항 및 제15조의2의 죄는 제외한다.
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죄. 다만, 같은 조 제4항의 죄는 제외한다.
10.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및 제9조제1항의 죄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2. 제34조의 규정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제34조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대상기관으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나 원시코드 등의 반환이나 산업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4. 대상기관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자가 산업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공개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사용·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7.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어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행위
8. 제11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행위
9.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해외인수·합병등을 하는 행위
10. 제11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

술 및 국가핵심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침해한 범죄와, ②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1조제1항<sup>3)</sup>의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침해한 범죄를 추가하려는 것임.

| 현행                                                  | 개정안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특정중대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제2조(정의) -----<br>-----<br>-----<br>-----. |
| 1. ~ 10. (생략)                                       | 1. ~ 10. (현행과 같음)                         |
| <신설>                                                | 1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        |

고서 해외인수·합병등을 하는 행위

11. 제11조제6항·제8항 및 제11조의2제8항·제10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12.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제36조(벌칙) ① 국가핵심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제14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6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 ② 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제1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제외한다)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 ⑧ (생략)

### 3)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0조(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을 취득, 사용 또는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2.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방위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3. (생략)
  4. 제19조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대상기관으로부터 방위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반환이나 방위산업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5. (생략)
- 제21조(벌칙) ①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0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 ② ~ ⑦ (생략)

|                                                                            |                                                                                                            |
|----------------------------------------------------------------------------|------------------------------------------------------------------------------------------------------------|
| <p><u>&lt;신 설&gt;</u></p> <p>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p> | <p>1항 및 제2항의 죄</p> <p>12. 「방위산업기술 보호법」</p> <p>제21조제1항의 죄</p> <p>13. -----제12호-----<br/>-----<br/>-----</p> |
|----------------------------------------------------------------------------|------------------------------------------------------------------------------------------------------------|

개정안은 산업기술, 국가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으로 유출·침해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기술, 국가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의 외국 유출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해당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 가. 중대범죄 신상 공개 제도 입법경과 및 논의사항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2023년 10월 24일 제정되어 2024년 1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으로, 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023. 10. 24. 법률 제197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및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3. 10. 24. 법률 제197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서 제한적으로 규정하던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그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최초의 일반법을 마련한 것

입.

그러나, 입법과정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범죄예방이라는 입법 취지<sup>4)</sup>가 인정되지만, 한편으로 i) 피의자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ii)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 등에 반하며, iii) 얼굴 공개로 인한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의 형사정책적 효과가 불분명하고, iv) 피의자의 가족들에게 사회적 불이익 등이 발생할 수 있어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에 반하고 실질적인 연좌제로 기능하게 된다는 이유로 신상공개 제도를 반대하는 의견이 존재하였음.<sup>5)</sup> 이러한 반대의견은 이 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한 비판 논거로 작용하고 있음.

## 나. 산업기술 등 유출범죄 처벌 개관

산업기술 등의 유출에 대한 처벌은 불법기술유출 사건에 대비하기 위하여 1991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영업비밀 보호 제도로 도입되었음.<sup>6)</sup> 이후 2007년 국내 핵심기술을 보호하고, 국가산업경쟁력을 강화하며, 국가의 안전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16년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4)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사회, 개인에게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특정중대범죄 사건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여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장영수, 공익으로 포장된 국민적 호기심, 신문과 방송(2009년), pp.50~53; 김희수, 우리가 증오하는 사람의 인권, 수사연구 제27권제3호, pp.48-54

6) 박성철,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적 고찰, 법학연구 제13집제1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139쪽

불법적인 방위산업기술 유출을 처벌하기 위하여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 제정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개별 경제주체의 영업비밀<sup>7)</sup>을 보호하는 사익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국가핵심기술<sup>8)</sup>로 지정된 특정 기술 그 자체를 대상으로 침해가 발생한 경우 침해자를 처벌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공익보호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으며,<sup>9)</sup> 「방위산업기술 보호법」도 방위산업기술<sup>10)</sup>로 지정·고시된 특정 기술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음.

## 다. 검토의견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204명이 산업기술 및 방위산업기술 유출 관련 범죄로 기소된 바 있고, 같은 기간 산업기술 해외 유출 적발 건수가 국가핵심기술 31건을 포함하여 97건에 이르러 피해액이 약 23조원대에 해당함에 따라,<sup>11)</sup> 기술의 국외유출 범

---

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국가핵심기술”이라 함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9) 박성철, 앞의 글, 151쪽

10)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위산업기술”이란 방위산업과 관련한 국방과학기술 중 국가안보 등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기술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제7조에 따라 지정하고 고시한 것을 말한다.

죄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산업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의 유출을 예방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인정됨.

<최근 5년간 기술유출범죄 검찰 처리 현황>

| 구분                               | 연도   | 건수    | 인원(명) | 검찰 처리 내역(명) |       |      |             |
|----------------------------------|------|-------|-------|-------------|-------|------|-------------|
|                                  |      |       |       | 기소          | 불기소   | 기소중지 | 이송·보완<br>수사 |
| 부정경쟁방지 및<br>영업비밀 보호에 관한<br>법률 위반 | 2020 | 473   | 979   | 191         | 788   | -    | -           |
|                                  | 2021 | 215   | 522   | 152         | 370   | -    | -           |
|                                  | 2022 | 313   | 792   | 66          | 193   | 94   | 439         |
|                                  | 2023 | 341   | 759   | 99          | 221   | 86   | 353         |
|                                  | 2024 | 국내    | 310   | 104         | 209   | 68   | 266         |
|                                  |      | 국외    | 28    | 13          | 16    | 6    | 36          |
|                                  | 소계   | 1,680 | 3,770 | 625         | 1,797 | 254  | 1,094       |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br>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2020 | 22    | 54    | 21          | 33    | -    | -           |
|                                  | 2021 | 13    | 68    | 55          | 13    | -    | -           |
|                                  | 2022 | 33    | 95    | 34          | 12    | 8    | 41          |
|                                  | 2023 | 37    | 85    | 32          | 17    | 9    | 27          |
|                                  | 2024 | 48    | 168   | 60          | 40    | 7    | 61          |
|                                  | 소계   | 153   | 470   | 202         | 115   | 24   | 129         |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br>위반                 | 2021 | 2     | 5     | 1           | 5     | -    | -           |
|                                  | 2022 | 2     | 3     | 0           | 1     | 0    | 2           |
|                                  | 2023 | 1     | 3     | 1           | 1     | 0    | 1           |
|                                  | 2024 | 0     | 0     | 0           | 0     | 0    | 0           |
|                                  | 소계   | 5     | 11    | 2           | 7     | 0    | 3           |
| 계                                |      | 1,838 | 4,251 | 829         | 1,919 | 278  | 1,226       |

통계자료: 대검찰청 연도별 기술유출범죄 처리현황

<최근 5년간 국외 산업기술 유출 적발 현황>

| 연도   | 산업기술(건) | 국가핵심기술(건) |
|------|---------|-----------|
|      |         |           |
| 2021 | 17      | 9         |
| 2022 | 22      | 10        |
| 2023 | 20      | 4         |
| 2024 | 23      | 5         |
| 소계   | 15      | 3         |
|      | 97      | 31        |

통계자료: 관계부처합동, 2024

다만, 개정안은 다음 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첫째, 신상정보 공개대상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헌법의 무죄추정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다 충분한 논의를 거

11) 김은기·임유석, 기술유출 범죄 예방을 위한 해외법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제22권제5호(통권 제76호), 80쪽

쳐 결정할 필요가 있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입법과정에서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기본권 침해 및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의견이 존재하였던 점, 현행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그 대상 범죄의 범위 등에 대한 치열한 논의를 거쳐<sup>12)</sup> 시행된 지 2년여 정도 지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이 법의 핵심적 요소인 신상정보 공개대상 범죄의 범위를 다시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다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둘째, 개정안의 신상정보 공개대상 행위와 현행법상 신상정보 공개대상인 특정중대범죄와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대상인 산업기술 등 국외유출범죄의 법정형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sup>13)</sup>상 산업기술의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억 이하의 벌금,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65억원 이하의 벌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sup>14)</sup>상 방위산업기술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의 벌금임. 반면에, 현행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제9호 및 제10호의 특정중대범죄<sup>15)</sup>는 그 법정

12) 이 법의 제정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의 대상이 되는 특정중대범죄의 범위를 기존 특정강력범죄법 및 성폭력처벌법에서의 공개대상 범위보다 확대할지 여부는 논의 초기부터 관계 기관 간 의견이 엇갈렸음[제40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 4면 등 참조].

13) 각주 2) 참조

14) 각주 3) 참조

15) 각주 1) 참조

형에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이 규정되어 있는 중범죄 등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할 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상 산업기술 등 국외유출범죄를 신상정보 공개대상으로 추가함에 있어서는 기존 특정중대범죄와의 균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신상정보 공개대상 특정중대범죄의 법정형>

|    | 특정중대범죄                                                                                                                                                   | 법정형                                            |
|----|----------------------------------------------------------------------------------------------------------------------------------------------------------|------------------------------------------------|
| 1  |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같은 편 제2장 외환의 죄 <sup>16)</sup>                                                                                                        | 사형, 무기징역, 하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는 10년이하 징역) |
| 2  |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의 죄 <sup>17)</sup>                                                                                                                 |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                         |
| 3  | 「형법」 제119조(폭발물 사용)의 죄 <sup>18)</sup>                                                                                                                     |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 4  |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제2항의 죄 <sup>19)</sup>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5  |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59조(상해치사)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 다만,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의 경우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에 한정한다. <sup>20)</sup> | 무기징역, 하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 6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 <sup>21)</sup>                                                                                                          | 사형, 무기징역, 유기징역, 벌금(강간과 추행의 죄에 한정됨)             |
| 7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sup>22)</sup>                                                                                                          | 사형, 무기징역, 유기징역, 벌금                             |
| 8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sup>23)</sup> 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제3항 및 제15조의2의 죄는 제외한다.                                        | 사형, 무기징역, 유기징역, 벌금                             |
| 9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죄. 다만, 같은 조 제4항의 죄는 제외한다. <sup>24)</sup>                                                                                           | 사형, 무기징역, 하한 5년 이상 유기징역                        |
| 10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및 제9조제1항의 죄 <sup>25)</sup>                                                                                                     | 사형, 무기징역, 하한 3년 이상 유기징역                        |
| 11 |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

16)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등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17)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18) 「형법」 제119조(폭발물 사용) ①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쟁, 천재지변 그 밖의 사변에 있어서 제1항의 죄를 지은 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19)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②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20)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259조(상해치사)**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 2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에서 “특정강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존속살해(尊屬殺害)], 제253조[위계(僞計)등에 의한 촉탁살인(囑託殺人)등] 및 제254조(미수범. 다만, 제251조 및 제25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부터 제291조까지 및 제294조(제292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 및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행을 선고받은 사람이 범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5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
    5. 「형법」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5조(준강도), 제336조(인질강도), 제337조(강도상해·치상), 제338조(강도살인·치사), 제339조(강도강간), 제340조(해상강도), 제341조(상습범) 및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활동)의 죄
 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죄는 특정강력범죄로 본다.
  - 2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 제290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

- 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1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2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294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의 미수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0조제1항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1조제1항의 미수범 및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 은닉한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 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
- 2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
- 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 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 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
-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1.>
-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2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제3조제2호·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 약품을 제조·수출입·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 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
8.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한편, 현행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의 특정중대범죄<sup>26)</sup>의 경우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낮은 범죄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성폭력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특수성이 있는 점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도 법정형이 낮은 죄들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셋째, 산업기술 유출 등의 범죄가 피의자 등의 기본권 침해 정도 및 무죄추정 원칙의 요청과 비교하여 그 신상정보를 공개할 공익적 필요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는지 검토가 필요함.

현행 특정범죄신상공개법 상 공개대상 범죄는 흉악범죄와 내란·외환죄, 범죄단체조직죄, 마약류범죄 등 국가적·사회적으로 해악이 중대한 범죄로 한정되어 있음. 그 공개요건으로 i) 범행의 잔인성 및 피해의 중대성, ii) 유죄의 충분한 근거 및 iii) 공공의 이익을 요구함으로써, 무죄추정을 받는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가 한정

---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생략)

25)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업으로서 한 불법수입 등)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같은 조 제4항은 제외한다),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에 관련된 행위만 해당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제60조제1항제4호(상습범 및 미수범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業)으로 한 자(이들 행위와 제9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께 하는 것을 업으로 한 자를 포함한다)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併科)한다.

②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같은 조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만 해당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마약은 제외한다) 또는 제60조제1항제2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제3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자(이들 행위와 제9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께 하는 것을 업으로 한 자를 포함한다)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9조(마약류 물품의 수입 등) ① 마약류범죄(마약류의 수입 또는 수출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범할 목적으로 마약류로 인식하고 교부받거나 취득한 약물 또는 그 밖의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생략)

26) 각주 1) 참조

된 범죄와 관련하여 우월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술유출 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로 피의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인격권 침해를 받는 반면, 산업기술 등의 유출범죄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현행 공개대상 범죄와 법정형에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 성격상 기존의 흉악범죄나 내란·외환범죄, 마약류 범죄 등과 비교할 때 범죄의 중대성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음. 또한, 기술유출범죄의 성격상 그 잠재적 피해자의 범위가 한정되어 범죄의 예방 및 국민의 알권리 측면에서도 신상정보 공개의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술유출범죄의 복잡하고 전문적인 성격상 수사단계에서 유죄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을 수 있어, 무죄추정의 원칙에 우선하는 신상정보 공개의 공익적 목적과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넷째, 산업기술 등의 국외유출 예방을 위하여 유출범의 신상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논의와 아울러 산업기술 등의 유출 예방에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을 먼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신상정보 공개대상을 정할 때에는 먼저 그 대상이 적정한지 등 기본권 침해를 줄일 수 있는 다른 수단은 없는지 고려하여야 하는데,<sup>27)</sup> 산업기술 등의 유출경로 대부분이 전·현직 임직원과 관련된

---

27)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마688 결정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사건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의 특성이나 불법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그 중 죄질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범죄로 등록대상을 축소하는 등 기본권 침해를 줄일 수 있는 다른 수단을 채택하지

것인 점<sup>28)</sup>에서 핵심 기술인력에 대한 인력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sup>29)</sup>

또한, 기술유출 행위에 대한 억제를 위해 형사적 제재뿐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 등 민사적 제재수단을 강화가 필요한데,<sup>30)</sup> 종래 별도의 양형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았던 산업기술 등 유출범죄에 대해 강화된 권고 형량을 제시하는 등 2024년 양형기준이 강화되고,<sup>31)</sup> 2025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종래 손해액의 3배에서 5배까지 인상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정리하면, 개정안은 산업기술 등의 국외유출범의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산업기술 등의 유출을 예방하려는 취지가 인정되나, 신

앞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고 있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고 판시함.

28) <2019년 ~ 2023년 산업기술 국외유출 경로>

| 구분 | 내부 | 외부     |     | 내부+외부 | 합계 |
|----|----|--------|-----|-------|----|
|    |    | 퇴직 임직원 | 타기업 |       |    |
| 국내 | 9  | 2      | 2   | 7     | 20 |
| 해외 | 4  | 1      | 3   | 5     | 13 |
| 합계 | 13 | 3      | 5   | 12    | 33 |

통계자료: 관계부처합동, 2024

29) 제5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25 ~'27), 관계부처합동, 2024

30) 김은기·임유석, 앞의 글, 85쪽

31) <2024. 7. 1. 시행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

4.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1  | 직무상 비밀 누설·도용  | ~ 8월      | 6월 ~ 1년6월 | 1년 ~ 3년6월 |
| 2  | 국내침해          | 8월 ~ 2년   | 1년 ~ 4년   | 2년6월 ~ 6년 |
| 3  | 산업기술 등 국외침해   | 1년 ~ 3년6월 | 2년 ~ 6년   | 4년 ~ 10년  |
| 4  | 국가핵심기술 등 국외침해 | 2년 ~ 5년   | 3년 ~ 7년   | 5년 ~ 12년  |

상정보 공개대상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헌법의 무죄추정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신상정보 공개대상 특정중대범죄와의 균형성 및 인격권 침해와의 법익 균형성 측면에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라. 관계기관 의견

국방부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기존 특정중대범죄와의 형량의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 신상정보 공개 취지와 중대성, 개정 실익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의 목적 및 성격과의 차이도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경제범죄 중 산업기술 유출범을 먼저 신상정보 공개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가조작범, 조세범 등 산업기술 유출범보다 형량이 높은 여타 경제범죄와 균형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고, 산업기술 유출범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피의사실이 확정되기 어려운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
|--------------|
| 문 의 처        |
| 02)6788-5056 |